

의안번호	2216478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6. 2. 9.
추계번호	26F050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자영업자의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, 어선 및
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영어민의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, 어선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4.5억원, 2030년 4.5억원 등 2027~2030년까지 4년간 총 22.4억원(연평균 4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자영어민의 어업권, 어선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9조 제1항)	-4.5	-4.5	-4.5	-4.5	-22.4	-4.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 제1항 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	-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, 어선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9조 제1항 (자영어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자영업자의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, 어선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20~2024)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0년 4.7억원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23년 3.3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5.8억원으로 증가하여 감면실적 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평균 취득세 감면실적: 4.5억원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자영업자가 직접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, 어선 및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
 - 적용대상: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·양식업권, 어선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
 - 육상해수양식어업
 - 육상양식어업
 - 육상 수조식(水槽式)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(築堤式) 수산종자생산업
 - 감면율: 취득세 50%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- (추계방법) 자영업자의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, 어선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

(2020~2024)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2020년 4.7억원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23년 3.3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5.8억원으로 증가하여 감면실적 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 (2020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2] 자영업자의 어업용 어업권·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: 2020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감면실적	4.7	4.4	4.1	3.3	5.8	4.5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의 직접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, 어선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4.5억원, 2030년 4.5억원 등 2027~2030년까지 4년간 총 22.4억원(연평균 4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7~2030년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자영업자의 어업권, 어선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9조 제1항)	-4.5	-4.5	-4.5	-4.5	-22.4	-4.5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